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96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967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고양시 조례 제2968호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7
고양시 조례 제2969호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고양시 조례 제2970호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고양시 조례 제2971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14
고양시 조례 제2972호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고양시 조례 제2973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217호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31
------------------	---	----

훈 령

고양시 훈령 제438호	고양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34
-----------------	----------------------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5-329호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소로1-1호선(향동지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9

공 고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5-217호

2025년 10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42

고양시 공고
제2025-2574호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44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96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수당지급액”을 “수당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인적자원과장 박 영 산
	팀 장 성 명	인사팀장 유 병 웅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신 민 영 (031-8075-2389)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일부 증액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증액함(제2조제2호).
- 나.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 업무’를 추가함(제2조제2호다목).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967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28 본문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를 “(자원순환 관

런 시설을 말한다)의 건축 또는 특정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로 하고, 비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다만, 재축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건축심의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했거나 각종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도시계획정책관
입안자	과장 성명	도시계획정책관 유 제 학
	팀장 성명	도시계획팀장 방 은 호
	담당자 성명·전화	김 화 영 031-8075-3072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 중요한 변경 사항은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29조의3).
- 나. 환경피해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함(별표 28).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968호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경관협정개요	경관협정 명칭	
	경관협정 위치	
	유효기간	
	주요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	
	협정 체결자수	

「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고양시 경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2. 회원명단
------	---

고양시 경 관 조 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김해련·최규진·김민숙 의원(찬성의원: 권용재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사무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 규정(별지 제3호서식).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969호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장예선·송규근·박현우 의원(찬성의원: 이해림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병역문화 정착과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이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5조제3항).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970호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8.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의 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비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장예선·김미수·김희섭 의원(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6명)

□ 제안이유

-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병역문화 정착과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이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제2항).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971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해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고양시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해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등에 배출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가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해당 연도에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가구에

한정하며,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가구는 2년 이상 감량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주 소 (연 락 처)	경기도 고양시 [H.P:]		
세 대 주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	제 조 사		구 입 금 액	원
	판 매 처		감 량 방 식	건조, 발효, 기타
	설 치 장 소			
보 조 금 신 청 내 역	신 청 금 액	금 원		
	은 행 명	※ 신청인 계좌 ()		
	입금 계좌 번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11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				
붙임서류: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5.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				
고양시 자원순환과 ☎ (행정) 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직 성명 (확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안자: 이해림·최성원·장예선 의원(찬성의원: 김미수 의원 등 4명)

□ 제안이유

-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2조).
-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사.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0조).
- 아.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972호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음택시”란 제3조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고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며, 고양시장으로부터 이음택시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운행비용”이란 이음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제3조(운행대상 마을)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마을 중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

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3. 그 밖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4조(이용대상) 이음택시는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기준 및 조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운행방법 및 요금) ① 마을 주민 요청에 따라 사전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운행한다.

- ② 운행의 기점 또는 종점은 운행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 ③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행정동 및 인접 동까지로 한다.
- ④ 이용 요금은 기본 미터 요금의 절반은 이용자가,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용요금의 지원율, 1회당 지원금액, 월 지원 한도 및 이용 대상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⑥ 운행시간은 지역 교통 및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운송사업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2. 지정된 운송사업자는 서식에 따른 운행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이용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이음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양특례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행대상 마을의 선정 및 해제
2.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3.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기타 사항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촉직 위원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주민대표, 택시업계 종사자, 교통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행비용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 시장에게 운행일지, 비용지원 신청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④ 운행비용의 지원금액, 지원 한도, 이용대상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지원 중단 및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이용현황 및 비용 청구 적정 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5조·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월 지원한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자: 고덕희·원종범·김희섭 의원(찬성의원: 김영식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도시·농촌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함.
- 고령층·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함.
- 교통 불편 지역 해소를 위해 ‘이음택시’ 운영·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규정(제1조~제2조).
- 나. 운행대상·운행방법 규정(제3조~제6조).
- 다. 운영위원회 설치·구성·회의 규정(제7조~제11조).
- 라. 이용신청·사후관리 규정(제12조~제14조).
- 마. 시행규칙 위임 규정(제15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973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신청 안건의 상정)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사용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산관리관은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불상정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1월”을 “계약월”로, “12월”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후”로 한다.

별표 중 연차별 감면 비율에서 “1년차~3년차: 100%”를 “1년차~3년차: 90%”로, “4년차: 70%”를 “4년차: 80%”로, “5년차 이후: 50%”를 “5년차: 70%, 6년차 이후: 50%”로, “기타 1. 연차 적용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기타 1. 연차 적용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관련 별표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비율은 신규로 사용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김해련·김미경·고덕희 의원(찬성의원: 권용재 의원 등 12명)

□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 적정한 사용료 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및 주민협의체 등의 시설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포함하는 사용신청 사무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동이용시설 사용신청 안건 상정 조항을 신설함(제19조의2).
- 나.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조항을 개정함(제20조).
- 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함(별표).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규칙 제1217호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생태하천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생태하천과장 김 주 영
	팀 장 성 명	생태하천팀장 손 종 락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김 한 샘 (031-8075-2769)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폐지규칙

□ 제안이유

-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고양시 낚시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 과태료 부과·징수는 「하천법」 제9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사무처리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이미 규정되어있으며, 「하천법」에 해당 규칙에 대한 위임조항이 부존재하여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고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1월 14일

고양시 훈령 제438호

고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이 경 희
	팀 장 성 명	행정지원팀장 장 주 민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여 인 찬 (031-8075-2175)

[별표 1]

청원경찰 정수표(제3조 관련)

(단위: 명)

부서별		정원
총계		49
본청 소계		30
본청	자치행정국	24
	교육문화국	2
	교통국	4
사업소 소계		13
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7
	상하수도사업소	6
구청 소계		6
구청	소계	2
	덕양구청	2
	소계	2
	일산동구청	2
	소계	2
	일산서구청	2

[별표 2]

감독자 직책수당(제17조제2항 관련)

직책	수당(월 지급액)
대장	7만원
반장	5만원
조장	4만원

고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 청원경찰 감독자 수당을 인상하여 청사방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원경찰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별표 1).
- 나. 청원경찰 감독자 수당을 인상하고자 함(별표 2).

고양시 고시 제2025-329호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소로1-1호선(향동지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5-165(2025. 6. 10.)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62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 2-1호선,소로1-1호선(향동지구)]사업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1) 중로2-1호선

- 시점: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625번지
- 종점: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625번지

2) 소로1-1호선

- 시점: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625-1번지
- 종점: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625-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중로2-1호선, 소로1-1호선) 정비공사

마.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단계	2단계					
결정	중로	2	1	15~18	집산도로	399	-	399	중로1-1	소로1-1	일반도로	09.12.30	
시행	중로	2	1	15~18	집산도로	251	-	251	중로1-1	소로1-1	일반도로	09.12.30	
결정	소로	1	1	10.5	국지도로	172	-	172	중로2-1	향동동 산104-20임	일반도로	18.12.05	
시행	소로	1	1	10.5	국지도로	172	-	172	중로2-1	향동동 산104-20임	일반도로	18.12.0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11, 16층(서초동, ds타워)
- 성명: 디에스네트웍스(주) (대표 : 김영철)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4.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 항과 같음

2. 지형도면 및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중로2-1호선 (변경)

일련 번호	구분	행정구역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기정	덕양구 향동동	625	도	6,310.6	3,780.0	공	고양시				
	변경	덕양구 향동동	625-3	도	3,780.0	3,780.0	공	고양시				분할 측량
2	기정	덕양구 향동동	579-1	공	4,263.4	18.0	공	고양시				
	변경	덕양구 향동동	579-2	공	17.6	17.6	공	고양시				분할 측량
계				기정	10,574	3,798.0						
				변경	3,797.6	3,797.6						

- 소로1-1호선 (변경없음)

일련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덕양구 향동동	625-1	도	2,007.0	2,007.0	공	고양시				
계				2,007.0	2,007.0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5 - 217호

2025년 10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25년 10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14. ~ 2025. 11. 30. (17일간)
3. 공고대상 : 48너6894 (소유자, 이해관계인)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6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10월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2025. 11. 14.

고양시장

운행정지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소유자명	사용본거지주소	용도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운행된 상세사유	불법 점유 및 운전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록관청명	등록일
등록	48나6894	KNMA4C2BMKP001188	SM6	소*섭	경기도 고양시 *****	개인용	기타	차량을 서울역에서 모르는사람에게 현금으로 판매 후 방치 (그 시간 사람이 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 , 그런 와중에 담보대출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함 (관리행사방해죄)	미상	미상	미상	경기도 고양시	2025.10.31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우리시 덕양구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4.

고 양 시 장

-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 2025. 11. 14. ~ 2025. 11. 28. (14일간)
- 2.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438)
 -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성사동 704-4, 311호] (☎010-5251-8064)
- 3. 공람내용 :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관계서류
- 4.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신청내용
 - 가.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다. 위 치 : 주교동 618번지 외 25필지
 - 라. 면 적 : 5,628.7㎡
 -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 바. 조합의 명칭 :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 사무소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7(성사동 704-4번지) 311호
 - 아.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변경 내용
 - 1) 정관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②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10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의 20%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②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10이상 16인 <u>이내</u> 로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의 20%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2) 소유권 변경에 따른 조합원 변경

매매	증여	상속	기타	계
1	1			2

3) 조합설립 동의자 추가

5. 의견제출 방법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 이메일 · 우편 · 팩스 접수

- 우편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백석별관, 6층), 도시정비과

- 이메일 : jyun2021@korea.kr

- 문의전화 및 팩스 : ☎031-8075-3438 (Fax : 031-8075-4936)

6. 기타사항 :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의견서

고양시 공고 제2025-2574호(2025. 11. 14.)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제출일자 : 2025. . .
- 제출의견